

제 1780 호(그 2)
1993. 10. 30.
(1993.10.30자는 정호)
(그 2로 발행 됩니다.)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이 원 종
편집인 : 공 보 관 김 우 석
전 화 : 731-6111~3
인 쇄 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~~전화 : 273-8111~3~~

시 보

차례

● 조례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 3035 호 |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시스템 설치조례 개정조례 | 2 |
| 제 3036 호 |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 개정조례 | 2 |
| 제 3037 호 |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중개정조례 | 3 |
| 제 3038 호 |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 | 3 |

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3-275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
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람 | | | | | | | | | | | | |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“새 물결 새바람 희망찬 신한국”

조례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
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
소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3. 10. 30
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3035호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

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①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
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과 질병예방을
위한 보건교육·연구·검진 및 진료에 관한
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교
건강관리소에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(이
하 "학교건강관리소"라 한다)를 설치함을
목적으로 한다.

②학교건강관리소에 건강관리사업의 지원
과 진료를 하기 위하여 부속의원을 둔다.

제2조(위치) 학교건강관리소는 서울특별시
종로구 신문로2가 2번지 64호에 둔다.

제3조(소장) ①학교건강관리소에 소장을
두고, 소장은 지방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하
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.

②소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명을 받아
소무를 관장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
한다.

제4조(진료비 등의 징수) ①학교건강관리
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검사를 의뢰
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
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관

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학교건강관리소의 직제
및 정원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
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
소부속의원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
다.

1993. 10. 30
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3036호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
수기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
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학교건
강관리소(이하 "학교건강관리소"라 한다)
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
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수기"
라 함은 진료비·수수료·검사료 및 수술비
를 말한다.

제3조(수기) ①의료보험에 의한 진료시의
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
의한 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기준에 의한
다.

②제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수기의 감면) 학교건강관리소장은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기
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가 아닌 학생의
경우 진료비의 30%

| | |
|---|--|
| 2. 학교장이 인정하는 극빈학생은 진료비 전액 |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학교건강관리소장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때 |
| 3. 학교보건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검사는 검사비 전액 | 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|
| 4.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한 우수체육 선수 신체검사 및 체육행사 의료지원 시는 진료비 전액 | 부 칙 |
| 5. 기타 학생과 교직원의 집단 검진 및 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
(별 표)

제 진 단 서 발 급 수 수 료

| 분 류 | 금 액(원)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가. 질병 및 병사용 진단서 | 1,700 | 이 표에 정한 제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제외하고 별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검사료를 가산한다. |
| 나. 상해진단서 | 5,000~50,000 | |
| 다. 사체검안서 | 5,000 | |
| 라. 건강진단서 | 1,700 | |
| 마. 사망진단서 | 4,000 | |
| 바. 장애진단서 | 2,000 | |
| 사. 추가발급(1전당) | 500 | |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
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
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
다.

1993. 10. 30
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

●서울특별시조례제3037호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
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하고, 동조 제
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이 조례를 하급교육청 교육장이 조성
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
지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 이 경
우 “교육감”은 “교육장”으로 본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
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
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3. 10. 30

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

●서울특별시조례제3038호

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
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교육환경정화 등) 영 제6조제2항제2
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라 함은 학

원이 위치한 건물 출입문에서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말한다. 다만, 학원이 위치한 건물 출입문과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장소가 위치한 건물 출입문간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례안입법예고

●서울특별시공고제1993-275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증개정

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3. 10. 30

서 울 특 별 시 장

개정취지 및 주요내용

1. 개정취지

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수도수요와 환경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시립위탁시설의 급수업종 적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양수기의 명칭을 수도계량기로 변경

나.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.

다.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 민 임시이주단지, 시립위탁시설(청

소년회관, 체육시설), 금수탑, 공설 소화전의 급수업종 조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. 11.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

다. 이 조례개정(안)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(3907-321~3)로 문의